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5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6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1
7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4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3. 8. 24.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현행 고독사 예방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바.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6. 13.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1인 가구가 아니라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변경함
- 나. 위임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1)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원중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8. 11.~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

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법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1.9.29.>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관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부담 기준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사 운영비 정비(안 제48조)

- 1) 원칙: 사용자부담(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을 포함)
- 2) 예외적으로 예산지출: 보수비,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주택관리비

나. 물품의 구분 정비(안 제55조, 별표 3)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가) 소모품 기준에 취득단가 변경: 1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나)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58조, 제9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7. 26.~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을 강화하고 물품 운영 기준을 상위법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물품 관리기준과 같이 변경하고,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2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 목적 및 근거

1. 목 적

-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
- 물품대장과 현품의 일치 및 보관
-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결정 및 신속한 처분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생략~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기재되어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2) 비소모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생략~

3) 물품의 상태 확인(물품관리관)

- 불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함

○ 물품의 상태조사

- (필요성) 물품의 상태를 검증하여 활용·사용 여부, 수리사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여,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불용대상 물품을 결정하고 그 처분방법을 결정

- (조사시기) 물품의 재물조사, 반납, 불용결정 시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실시

- (조사기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구분

①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②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③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④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1. 제안이유

- 출산·육아·복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센터 등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 조성

2. 주요내용

가. 개 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일원
- 사 업 명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2025. 12. (2년 4개월)
- 사 업 비 : 30,672백만원
 - 용역비 1,800, 부지매입비 15,100, 공사비 13,772
 - 기확보 4,300백만원(용역비 1,300, 부지매입비 3,000)

○ 사업내용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부지조성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 18개과/300병상/응급의료센터 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 및 신생아를 위한 모자동실
-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 : 영아·임산부관련 통합 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행복나눔과) : 육아정보나눔터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80필지, 96,638㎡(29,232평) / 【붙임1】

다. 추진경과

- 2019. 11. 11. :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결정
- 2021. 7. 16.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 2022. 10. 4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1차)
- 2022. 11. 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2차)
- 2023. 1. 13.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 2023. 3. 3. : 거창군-대한적십자사 교환 협약 체결
- 2023. 4.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의결
- 2023. 4. : 제1회 추경 예산 43억원 확보
- 2023. 5.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 기본계획 용역
- 2023. 6. 19. : 경상남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신축 실무협의체 회의(3차)
- 2023. 7. 12.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손실보상 지원 용역

라. 향후계획

- 2023. 8.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3. 9. : 제2차 추경 부지매입비 추가 편성 및 토지 매입
- 2023. 9.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 2024. 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 2024. 11. ~ 2025. 5. :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
- 2025. 6. ~ 12. : 부지조성공사 시행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으로 군민 대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기대
- 의료·복지·생활편의 등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시가지 조성 기반 마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3. 검토의견

-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접근성, 토지이용과 경제성 등 3개 분야 8개 항목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후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거쳐 선호도가 높고 교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를 반영한 결과로
-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과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취득재산 세부내역 1부.

붙임1
취득재산 세부내역

□ 거창읍 대평리 1364-24일원(80필지, 96,638㎡ / 29,23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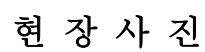
(단위 : ㎡, 원)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 고
계	80필지		114,922	96,638		3,828,233,450	
1	거창읍 대평리 1364-24	답	2,208	2,208	35,100	77,500,800	
2	거창읍 대평리 1362-22	답	889	889	35,300	31,381,700	
3	거창읍 대평리 1362-33	답	932	932	35,300	32,899,600	
4	거창읍 대평리 1362-36	답	1,445	1,445	35,100	50,719,500	
5	거창읍 대평리 1364-27	답	1,772	1,772	35,100	62,197,200	
6	거창읍 대평리 1364-35	답	1,395	1,395	35,100	48,964,500	
7	거창읍 대평리 1362-28	답	211	211	51,400	10,845,400	
8	거창읍 대평리 1362-19	답	1,412	1,412	51,400	72,576,800	
9	거창읍 대평리 1370-8	답	1,636	1,636	35,100	57,423,600	
10	거창읍 대평리 1362-31	답	1,405	1,405	35,100	49,315,500	
11	거창읍 대평리 1364-17	답	2,066	2,066	35,100	72,516,600	
12	거창읍 대평리 1362-35	답	1,898	1,898	35,100	66,619,800	
13	거창읍 대평리 1364-16	답	2,069	2,069	35,100	72,621,900	
14	거창읍 대평리 1364-3	답	945	945	35,100	33,169,500	
15	거창읍 대평리 1370-20	답	1,307	1,307	45,900	59,991,300	
16	거창읍 대평리 1362-8	답	1,234	1,234	58,300	71,942,200	
17	거창읍 대평리 918-6	답	476	476	95,800	45,600,800	
18	거창읍 대평리 917-1	답	509	509	99,500	50,645,500	
19	거창읍 대평리 917-6	답	218	218	81,400	17,745,200	
20	거창읍 대평리 920-1	답	248	248	64,900	16,095,200	
21	거창읍 대평리 1362-11	답	2,737	2,737	35,100	96,068,700	
22	거창읍 대평리 1364-30	답	2,162	2,162	35,100	75,886,200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 고
23	거창읍 대평리 1362-30	답	575	575	35,100	20,182,500	
24	거창읍 대평리 1362-20	답	3,028	3,028	35,100	106,282,800	
25	거창읍 대평리 1362-15	답	1,540	1,540	35,100	54,054,000	
26	거창읍 대평리 1362-24	답	2,995	2,995	35,100	105,124,500	
27	거창읍 대평리 1370-22	답	1,176	1,176	45,900	53,978,400	
28	거창읍 대평리 1370-23	답	988	988	45,900	45,349,200	
29	거창읍 대평리 1362-23	답	1,012	1,012	35,300	35,723,600	
30	거창읍 대평리 1362-34	답	691	691	35,300	24,392,300	
31	거창읍 대평리 1362-9	답	1,236	1,236	35,100	43,383,600	
32	거창읍 대평리 1362-12	답	1,131	1,131	35,100	39,698,100	
33	거창읍 대평리 1362-29	답	1,203	1,203	35,100	42,225,300	
34	거창읍 대평리 1362-10	답	1,045	1,045	35,100	36,679,500	
35	거창읍 대평리 1363-2	답	1,788	1,788	35,100	62,758,800	
36	거창읍 대평리 1364	답	985	985	35,100	34,573,500	
37	거창읍 대평리 1364-11	답	1,461	1,461	51,400	75,095,400	
38	거창읍 대평리 1364-12	답	331	331	35,100	11,618,100	
39	거창읍 대평리 1364-36	답	331	331	33,700	11,154,700	
40	거창읍 대평리 1364-37	답	608	608	33,700	20,489,600	
41	거창읍 대평리 1364-13	답	2,172	2,172	35,100	76,237,200	
42	거창읍 대평리 1364-25	답	988	988	35,100	34,678,800	
43	거창읍 대평리 1364-15	답	2,046	2,046	35,100	71,814,600	
44	거창읍 대평리 1364-26	답	1,223	1,223	35,100	42,927,300	
45	거창읍 대평리 1370-21	답	972	972	45,900	44,614,800	
46	거창읍 대평리 1364-29	답	585	585	35,100	20,533,500	
47	거창읍 대평리 1364-21	답	2,261	2,261	51,400	116,215,400	
48	거창읍 대평리 1364-32	답	205	205	35,100	7,195,500	
49	거창읍 대평리 1364-33	답	760	760	33,700	25,612,000	
50	거창읍 대평리 1364-34	답	638	638	35,100	22,393,800	
51	거창읍 대평리 1370-6	답	1,031	1,031	35,100	36,188,100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기준금액	비 고
52	거창읍 대평리 1370-7	답	1,412	1,412	35,100	49,561,200	
53	거창읍 대평리 1364-4	답	1,950	1,950	35,100	68,445,000	
54	거창읍 대평리 1364-5	답	959	959	35,100	33,660,900	
55	거창읍 대평리 1364-6	답	1,921	1,921	35,100	67,427,100	
56	거창읍 대평리 1362-32	답	2,826	2,826	35,100	99,192,600	
57	거창읍 대평리 1364-23	답	744	744	35,100	26,114,400	
58	거창읍 대평리 1364-14	답	1,722	1,722	35,100	60,442,200	
59	거창읍 대평리 1370-19	답	678	678	35,100	23,797,800	
60	거창읍 대평리 1362-21	답	1,871	1,871	35,100	65,672,100	
61	거창읍 대평리 1316-4	답	195	195	102,300	19,948,500	
62	거창읍 대평리 1364-1	답	1,008	1,008	35,100	35,380,800	
63	거창읍 대평리 1364-2	답	1,012	1,012	35,100	35,521,200	
64	거창읍 대평리 1324-1	답	7	7	91,900	643,300	
65	거창읍 대평리 1363-1	답	1,581	1,581	51,400	81,263,400	
66	거창읍 대평리 918-2	답	2,124	2,124	116,300	247,021,200	
67	거창읍 대평리 1362-14	답	2,625	2,625	35,100	92,137,500	
68	거창읍 대평리 1364-22	답	1,983	1,983	38,400	76,147,200	
69	거창읍 대평리 920-3	답	1,474	1,474	84,900	125,142,600	
70	거창읍 대평리 919-3	답	949	949	84,900	80,570,100	
71	거창읍 대평리 543-2	구거	17,719	2,699	5,850	15,789,150	
72	거창읍 대평리 1362-42	도로	620	109	11,200	1,220,800	
73	거창읍 대평리 1362-43	도로	559	545	11,200	6,104,000	
74	거창읍 대평리 1362-44	도로	390	374	11,200	4,188,800	
75	거창읍 대평리 1362-45	도로	321	232	11,200	2,598,400	
76	거창읍 대평리 1362-46	도로	473	163	11,200	1,825,600	
77	거창읍 대평리 1362-51	도로	883	544	11,200	6,092,800	
78	거창읍 대평리 1362-52	도로	615	293	11,200	3,281,600	
79	거창읍 대평리 1362-53	도로	985	447	11,200	5,006,400	
80	거창읍 대평리 1452-21	구거	1,137	12	11,200	134,400	

지적도 및 현장사진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신규모집 공고 선정 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 탁 명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나. 위 치
 -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다. 위탁사무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¹⁾ 통합 관리
 -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와 직접계약이 아닌, 공적 운영주체와 계약을 통해 농가수요에 따라 단기 고용이 가능한 제도

-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사업
 -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2023년 예산 : 150백만원)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및 운영방향

-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
 - ▶ 근로자 이송 차량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시스템 마련
 -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을 활용해 농작업 적기에 인력 알선
- 현장실습교육이 가능한 농가 지정으로 신규 구직자에 대해 현장실습 기회 제공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13조

다. 향후계획

-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0.
- 위·수탁 체결 및 공증 : 2023. 12.

5. 검토의견

-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을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 농번기 인력수급, 농작업 교육 등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13조

II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현황

- 센터의 시설과 위치
 -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사업비 : 150백만원(국 45, 도 20, 군 85)
- 운영방법 : 민간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3년간
 - ※ 재협약 : 2020. 12. 22. / 최초 위탁 : '13. 9.
- 위탁기관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이사장 변동규
 -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3년 설립)

합계(명)	농가	농작업자	현물출자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455	185	264	4	1	1

- 위치도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실



농업근로자 숙박시설

III

운영방향

구 분	현 행	확대 시행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	농작업자 대상으로 수탁기관 차량을 활용한 출·퇴근 운송	농가 권역별 차량운행 노선을 설정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시스템 마련
농번기 인력수급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5월) 동안 관외 인력을 유치하나, 사과 등 대농가 우선으로 인력 수급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일손 공급 - 수확, 제초 등 단순작업이 가능한 농작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매칭
농작업 교육	신규 구직자에 대해 농장주가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비 지급	현장실습교육이 가능한 농가를 지정 후 공공형 계절근로자까지 교육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시행

⇒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공공형 계절근로 통합 관리**

IV

운영실적

□ 연도별 사업실적

(2023. 7월말 기준)

연도별	농작업 알선실적 참여인원(명)			출퇴근 차량운행						숙 소 이용자 (명)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 행 수	수 송 인 원	운 행 수	수 송 인 원	운 행 수	수 송 인 원	
2014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	-	숙 소 공 사
2015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	-	
2016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500
2017	11,013	9,822	1,191	305	3,491	284	2,840	21	651	540
2018	10,128	9,358	770	240	2,700	225	2,250	15	450	320
2019	10,968	10,206	762	205	2,232	191	1,910	14	322	300
2020	10,540	9,870	670	172	1,930	158	1,580	14	350	320
2021	10,035	10,035	-	178	1,780	178	1,780	-	-	-
2022	10,593	10,013	580	215	2,280	170	1,700	45	580	320
2023	7,168	6,828	340	89	970	65	650	24	320	180

□ 연도별 사업비

연도별	위탁비(천원)	운영현황
2014	90,655(군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최초 위탁운영
2015	106,555(국 15,9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6	120,655(국 30,0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7	140,655(국 50,000 군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국비 사업
2018	150,000(군비)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2019	150,000(도 36,000 군 114,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
2020	150,000(도 30,000 군 120,000)	도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
2021	150,000(국 40,000 도 18,000 군 92,000)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사업
2022	150,000(국 40,000 도 18,000 군 92,000)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사업
2023	150,000(국 45,000 도 20,250 군 84,750)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 사업

※ 2014년 ~ 2023년 :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V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 탁 금 : 150백만원(2023년 예산 기준)
- 대 상 : 위탁자 「거창군」, 수탁자 「선정기관」
- 위탁사무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 사업
 -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주요내용
 -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보증을 위한 공증 시행
 - 위탁사업비는 매년 책정하며 연 사업비는 반기별 분할 지급
 - 사업 추진 후 정산 및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VI

양우계획

- 2023. 8. : 거창군의회 임시회 동의 요구안 제출
- 2023. 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위·수탁 협약서 공증

청 소 년 활 동 시 설 민 간 위 탁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 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시설개요

구 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3층	전시실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구 분	위탁사무 및 조건	비 고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282,000천원(4D 영상관 임대비 등 지원)

※ 국민여가캠핑장 : 지방세법에 따른 대부료 징수/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수탁자 자격사항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2023. 9. : 제272회 임시회 의안 상정
- 2023. 9. : 공개모집 공고
- 2023. 10.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교사,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9명 등)
- 2023. 10. : 수탁자 선정 발표
- 2023. 12.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청소년 활동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 대상 시설은 월성 청소년 수련원, 월성 우주창의 과학관, 국민여가 캠핑장 등 3개소임.
- 청소년 수련원과 우주창의 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캠핑장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으로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8. 2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8. 24.

2.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시설 : 거창시니어클럽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 1실 이상
 -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1개 이상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100㎡이상(사무실 및 사업장 등)
- 필요인력 : 5명 이상(기관장 1, 상근 직원 4명 이상)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소요예산 : 330,000천원(2023년 기준)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 참여 지원사업 추진 가능

다.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위탁기간 : 2024. 3. 21. ~2029. 3. 20.(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라. 향후 추진일정(안)

- 2023. 10.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2023. 12. :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12.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 2024. 3. : 위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5. 검토의견

- 거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2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자 공개모집을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였음.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 훈련 등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 운영법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 ❖ 거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2024. 3. 20.)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I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II 위탁개요

- 시 설 명 : 거창시니어클럽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17
- 위탁기간 : 2024. 3. 21. ~ 2029. 3. 20.(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2항에 의거 위탁기간 설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단위:천원/2023년 기준)

구분	예산(천원)	기관운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1,128명)	비고
계	45,895,741	330,000	45,565,741	29개 사업

- 추진일정

내용	민간위탁계획 및 적정성 검토	군의회 동의안제출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시기	2023. 8월	2023. 9월	2023. 10월	2023. 11월~12월	2023. 12월

Ⅲ 수탁자 선정 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선정기준의 합리적 수립과 절차의 객관성 강화로 최적의 위탁기관 선정
- 전문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수준 및 심사결과의 공신력 제고

Ⅳ 운영위탁법인 선정

1.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주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신청 제외대상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5년 이내 법인 및 산하시설에 예산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벌금 형 이상을 선고 받은 법인 또는 관련 내용으로 민. 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 무효 처리함

2.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 1실 이상
-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1개 이상
- 시설의 규모 : 연면적 100㎡이상(사무실 및 사업장 등)

3. 인력기준

- 인력배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둘 것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탁범위

- 시니어클럽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 그 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V 공모 및 선정방법

1. 모집공모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3. 10. 4.(수) ~ 10. 27.(금) 24일 간
-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3. 10. 25.(수) ~ 10. 27.(금)
- 접 수 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055-940-3122)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거창시니어클럽 위탁신청서 1부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각서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현황(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

- 수탁자 선정 심의지표 자료 -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
- 수탁자 선정 심의지표 자료 증빙서류
- 기타 수탁자 선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심의일자 : 2023. 11월 중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의기관 :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 9명 이내(② 해당 위원이 전체위원의 3/4 이상으로 구성)
 - 위원구성 : ① 관련 공무원 ②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심사항목 및 선정방법

○ 심사항목

항목	점수(100점)	심사내용
1.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 법인의 적격성(15) ○ 법인의 사업능력(15)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 인력의 전문성(13) ○ 사업계획의 전문성 등(25) ○ 재정부담 계획, 재산보유 현황(12)
3.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	15점	○ 지역사회 관계 등
4. 종합의견	5점	○ 심사위원 종합판단

○ 선정방법

- 신청법인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PPT 자료 활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심의는 신청접수 순으로 제안 설명(15분)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고, 심의위원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법인 임직원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제안 설명 발표

※ 사업 설명회는 법인 임원진 또는 시설장(내정자)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참석 제한하고 발표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PPT 발표 준비 : 심사일 3일 전까지 제출(USB)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각1명)」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받은 기관 중 최고 득점 법인이 협상대상 1순위이며,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한 결격사항 발견 시 후순위자와 협상 진행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동점의 경우 심사항목 ①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점수가 높은 법인, ② “수탁자의 적격성” 점수가 높은 법인, ③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순으로 결정
- 심사대상이 1개 법인이라도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재공고

VI 향후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9월 임시회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0. 4.(수) ~ 10. 27.(금)
 - 접수기간 : 2023. 10. 25.(수) ~ 10. 27.(금)
- 심사계획 수립 : 2023. 11월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3. 11월중
 - 구성요건 :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 ~ 2024. 3. 20. 한